

[사 건 명] 행심 2018 - 63

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

청구인 : ◇◇◇◇

피청구인 : ○○○○○○○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.

[청구취지]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청구를 이행하여야 한다.

[재결이유]

I. 사건개요

가.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‘① △△군수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의 자녀들 중 △△ 소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내역서와 ○○○○의원과 관련하여, ② 소속 직원의 직계존비속 중 △△ 소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내역서 및 ③ 도의원의 출장사무내역서 및 ④ △△ 소재 정신병원 지원한 사업내역서’에 대한 정보공개를 ○○○○○○○○선거관리위원회에 2018. 9. 14. 청구(이하 ‘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’라 한다)를 하였고, ○○○○○○○○선거관리위원회에 보유하지 않은 정보는 정보보유 기관으로 특정하여 이송시켜 달라고 했다.

나. ○○○○○○○○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☆☆☆☆시교육청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하였고, ☆☆☆☆시교육청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였고, 동 기관에서는 2015. 1. 16. 청구인에게 ○○○○○○

◎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임을 통보하였다. 동 기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내부종결 처리하였다.

다.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2018. 10. 21. ○○○○○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, 2018. 11. 1. 우리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관되었다.

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- 해당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, 피청구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있어 비공개로 간주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청구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III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
1. 관계법령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3조,

2. 판 단

가.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- 1)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(이하 ‘정보보유기관’이라 한다)이 ○○○○○○○학교임을 알면서도 정보보유기관인 ○○○○○○○학교가 아닌 ○○○

●●●●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○○
○○○○학교로의 이송을 요청하였다.

- 2)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☆☆☆☆시교육청으로 이송되었으나, 이 정보보유기관인 ○○○○○○학교는 인천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기관으로, 잘못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를 하였다.

나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함에 대한 판단

- 1) 「행정심판법」 제2조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,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“처분”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.
- 2)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○○○○○○학교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며,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,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.

IV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